2010년 제4차 이사회 서면결의

농가회원 가입 승인

본회는 회원가입을 요청한 농가회원의 본회 가입을 본회정관 제5조(회원자격 및 구분) 및 회원 및 회비규정 제3조(가입 및 탈퇴)에 의거, 정회원 가입 승인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부의한 결과 재적 이사 10명중 9명의 찬성으로 본회 정관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0조(이사회의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다.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와의 MOU체결 유보

일정 추후 논의키로

본회는 당초 7월 21일(수)로 개최키로 예정했던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와의 업무협조 상생협약식(MOU)을 유보했다.

계열업체와 농가간의 해묵은 갈등을 내부 소통 강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행사에 대해 양계협회에서 줄곧 훼방을 놓고 있는 점과 소비자시민모임의 왜곡된 자료배포로 업계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 농가들이 한창 바쁜 시기인 점 등이 고려되었다.

양계협회측이 당일 행사를 방해하려고 행사장 앞에 집회 신고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본회는 "소시모의 이상한 보도자료 배포에 항의하는 집회에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다른 단체의 내부행사에 개입하고 방해하는 일은 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각성하고 자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본회의 농가회원은 7월 16일 현재 1,072농가이고 사육규모는 55백만 수에 달하기 때문에 이미 국내 육계공급량의 72%가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행사 유보와 관련하여 본회는 MOU 체결의 기본 취지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간 상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는 육계 계열화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내부 조율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7월 19일 "산업발전 저해하는 이성잃은 발목잡기 그만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계협회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마치 주인인양 남의 조직의 행사를 방해하고 나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항의 방문

1인 시위 펼치는 등 항생제 관련 보도 강력 항의

본회와 한국토종닭협회 등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한가협)가 "시중 판매 닭고기서 미국 FDA가 '사용 금지' 시킨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검출"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유포한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을 상대로 1인 시위 등을 펼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번에 소시모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중 엔로플록사신은 국내 기준치가 가금근육 0.1ppm, 가금류간 0.2ppm, 가금류지방 0.1ppm, 가금류신장 0.3ppm이고, 검출된 양(0.003ppm)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지만 항생제에 크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보도해 닭고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실제 본회 최상영 전무와 한가협 문정진 사무총장은 지난 7월 9일, 12일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에 위치한 소시모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 및 1인 시위를 펼치고, 소시모가 무책임한 언론보도를 조장해 소비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양계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시모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금번 과잉보도는 전적으로 소시모의 잘못이며,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닭고기를 불량 닭고기로 오인하게 만들어 '복' 성수기를 앞두고 닭고기 소비위축이 되도록 원인 제공한 것에 대해 닭고기 산업의 입장 전달과 함께 그로 인한 파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소시모의 관계자는 "이번 보도자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입장을 전달하려는 것이 언론에서 과잉보도한 것을 인정한다"며, "양계농가가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보도자료로 인한 업체 및 농가피해가 없도록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가협은 지난 7월 11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닭고기 최대 소비시즌 '복'을 코앞에 두고 소시모의 무책임한 보도자료 배포로 인해 사육농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시모의 이번 행동에 대해 닭고기 산업의 존폐를 내걸고 투쟁에 임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가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식 공문을 통해 항생제 관련 질의를 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8일 회신을 통해 "닭고기에 대한 엔로플록사신의 법적기준치는 해당 약물에 대한 전문기관의 엄격한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충분한 안전역을 부여해 설정된 것"이라며 "0.003ppm은 최대잔류허용기준치에 미치지 않아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사 오보에 강력 항의

7월 29일자 정정 보도자료 게재

본회와 한국토종닭협회 등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같은 달 22일자 국제신문 22면에 "우린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는 제하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기사를 여과없이 게재한 국제신문사를 방문, 정정보도를 요구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칼럼 형식인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닭은 35일가량 길러진다. 최소한 영계라도 되려면 6개월 이상은 지나야 하는데, 깜짝 놀랄 마술이다. 비밀은 성장촉진제에 있다. 물과 사료, 전기요금 등

을 아끼려면 하루라도 빨리 키워야 하니 성장촉진제를 투여한다" "닭뼈가 맥없이 부러지는 이유다" "밀집된 축사에서 A4 용지 한 장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닭은 죽지 못해 산다. 닭들이 죽거나 병들면 안되니 항생제를 투여한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률 세계 1위다" 등 사실을 왜곡한 기사들이 넘쳐난다. 이 내용대로라면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고기제품은 먹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7월 23일자로 설명자료를 내 "식약청에서 정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허용기준에 의한 닭고기의 항생제 잔류물질 위반율은 높지 않다"면서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는 기사제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닭고기 잔류물질 위반율은 지난해 0.05%로 미국의 0.82%, 영국 0.25%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며 위생적으로 안전하단 분석이다. 또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도축할 때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은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 최상영 전무와 문정진 사무총장은 지난 7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우리나라 양계산업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도 안되는 글을 버젓이 쓴 하정필 강사가 몸담고 있고 부산환경운동연합과 기고의 내용을 확인절차도 없이 그대로 게재한 국제신문사를 방문해 정중한 사과와 함께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 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국제신문 담당자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양계농가가 소비둔화로 인해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이런 내용이 제대로 검증, 검토되지 않고 실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는 마음으로 사과문과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한 만큼,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힘쓸 것이며, 국민들의 안전한 닭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알리기도 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담당자는 "양계농가가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며, 더욱 더 안전한 닭고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을 진행하려던 것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양계농가가 어렵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이런 내용이 양계농가 및 가금산업의 피해까지 생각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계농가와 관련산업 당사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신문은 7월 29일자 2면에 "바로 잡습니다"란을 통해 정정 보도를 게재했으며, "양계장 안전성 법으로 엄격히 관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제2차 유통위원회 개최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7월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2차 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비용 원가산출, B2B 활성화, 시세 및 수급관련 동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주)체리부로 이현택 상무가 사임을 표함에 따라 차기 회의 시 신임 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에 본회 의견제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25일 공포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 정 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비 고
시행령 제17조의2관련 [별표 1] 검사관과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및 검사원의 수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다. 3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 3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닭 6만수 이하로 하되, 책임수의사가 1인이 추가될 때마다 닭 2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1) 현행 법령 유지 1.가, 나 현행과 같음 다. 3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6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인이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4만수를 추가 산정한다. 2)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책임수의사가 1인이 추가될 때마다 닭 3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이유〉 ● 업체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임 ● 영상 판독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으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업체의 경비부담 근거자료 ● 연평균 20만수 도축 시 - 현행 : 7명 - 개정안 : 10명 ● 책임수의사 - 1명 신규채용 연봉 : 24,000천원 - 24,000천원 × 3명 =72,000천원 ● 검사원 - 1명 신규채용 연봉 : 18,000천원 - 18,000천원 × 3명 = 54,000천원 ● 연간 126,000천원 추가 소요
시행령 제32조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7.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 · 운반 · 진열 또는 판매한 자(법 제47조제2항제1호) 가. 도축업 영업자 : 과태료 300만원 나. 축산물보관업 영업자 : 100만원 다.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 100만원 라.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 100만원	가. 현행과 같음 나. 축산물보관업 영업자 : 300만원 다.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 300만원 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 300만원 〈이유〉 ● 과태료의 형평성을 부여	

◆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개 정 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비 고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마트 등 ---	7. 가.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닭·오리고기 포장육 이외의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마트 등 --- 〈이유〉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오리고기 포장육을 해포하거나 해포 절단해서 판매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는 포장유통의무화 사업 도입취지와 역행하는 것임	

◆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 정 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비 고
시행규칙 제7조의10관련 [별표 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4. 닭고기,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에는 포장된 닭고기, 오리고기를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가 포장된 닭고기, 오리고기를 조리하기 편하도록 절단해 줄 것을 영업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포장을 뜯고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판매할 수 있다.	4. 닭고기,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래 단서 규정 전부 삭제 (다만, 소비자가 포장된 닭고기, 오리고기를 ---- 포장을 뜯고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판매할 수 있다.) 〈이유〉 ● 소비자가 통 마리로 사서 절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 벌크포장육을 한 마리씩 절단을 해서 판매하는 부조리를 저질러도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생물 등의 교차오염에 따른 문제야기 등 포장유통의무화 전면시행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임. ● 절단을 요구할 경우 ① 통 마리 절단 요구 : 통 마리 절단 포장육을 판매 ② 소비자가 원하는 부위의 포장육 요구 : 각 부위별 포장육을 판매 ● 식육포장처리장에 서 주문·생산·공급 이루어지면 됨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도 포장 유통이 의무화된다. 또 책임수의사 배치기준을 검사관 방식으로 개선하고, 1인당 닭 2만수로 배치 기준을 강화했으며, 축산물가공품 분할판매업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 본회는 지난 7월 23일 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

닭고기 우수성 등에 대해 홍보

본회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C, D홀에서 열린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에 참가해 회원사 브랜드 홍보를 비롯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

특히 8월 5일부터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너를 제작했으며, 이 외에도 쇼핑백 5천장을 제작, 소비자에게 홍보했다.

또 닭고기 우수성 홍보 판넬과 포스트잇 등 홍보물 5천개를 제작, 본회 부스를 찾은 참관객에게 쇼핑백에 담아 증정했다.

이번에 제작한 닭고기 우수성 홍보 판넬에는 닭고기가 우리 몸에 좋은 10가지 이유와 품질보증마크 소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포스트잇에는 3저1고(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고단백)의 닭고기 우수성과 육류의 부위별 영양성분표 등이 담겨져 있다.

이번 농어촌산업박람회는 '우수축산물페스티벌', '수산물브랜드대전'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자세한 내용은 '현장취재' P 117 참조).

제4차 편집위원회 개최

최충집 상무 신임 편집위원장으로 위촉

본회는 지난 7월 1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4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호 편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는 (주)하림 박희권 상무(편집위원장)와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상희 실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3대 편집위원장으로 (주)마니커의 최충집 상무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한편 본회는 오는 8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5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닭고기' 9월호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본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주)하림 홍보팀 김대식 팀장과 (주)카길애그리퓨리나 김진형 전무를 신임 편집위원으로 위촉했다.